

라디오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자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Jean Marie Le Pen c UNADIF, FNDIR et autres  
Cour de Cassation (파기원), 1995년 12월 18일 판결

## 사실관계

1987년 9월 13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대표인 르 펡(Jean Marie Le Pen) 씨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독일에서 자행된 유대인을 비롯한 특정민족에 대한 인종학살의 실제와 양태에 관한 주제의 라디오방송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Le Pen 씨는 나치의 독가스실 사용은 제 2차세계대전의 역사에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실종자가족과 집단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국민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d'prot's intern's et familles dedisparus, 약칭 UNADIF)과 그 외 7개 단체는 1988년 3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인종차별반대와 인민상호간의 우의를 위한 운동단체' (Mouvement contre le racismet pour l'amiti entre les peuples, 약칭 MTAP)와 '인종차별 및 유대인차별 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 (Ligue internationale contrele racisme et l'antis mitisme, 약칭 LICRA)는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991년 3월 18일 베르사이유(Versailles)법원의 판결에 대한 르 펡 씨의 상고에 따라 파기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베르사이유(Versailles) 항소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과 이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 Pen 씨는 인종차별, 증오 및 인종적인 문제로 폭동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72. 7. 1. 법률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바, 동 법률 제 1 조에서는 1881. 7.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규정에 의거한 모든 소송은 그 행위를 범한 날로부터 3월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항소법원(courd'appel)은 3월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972. 7. 1. 법률에 의거하여 원고단체의 제소를 수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야 하는 바, 그 이유는 1881. 7. 29. 법률 제 65 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원고단체들은 Le Pen 씨의 인종차별주의자적인 성격의 발언내용에 기초하여 제소한 것이다. 원고단체들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신 민사소송법 제 4 조 및 제 5 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1881. 7. 29. 법률 제 65 조의 시효에 따른 소송을 회피하면서, 항소법원으로서 원고단체에 의하여 제기된 쟁점을 인용하였다. 그것은 동시에 원고단체들의 주장과 급속심리로 내려진 결정 및 상기단체가 Le Pen 씨를 비난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문제의 발언은 항소법원에 의하면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1881. 7. 29. 법률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동 법률 제 6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야 한다. 쟁송과 관련된 발언이 있는 후 3 월이 지났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1881. 7. 29. 법률 제 65 조의 적용을 통한 원고단체들의 제소를 수리할 수 없었다.

## 판시사항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적절히 적시한 바와 같이, 1972. 7. 1. 법률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발언이나 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에 관한 민법 제 1382 조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확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집시족이나 유태인이 감금된 수용소에서 자행된 인종차별의 양태를 지엽적인 문제라고 적시한 Le Pen 씨의 발언은 어떤 종족, 국가, 인종 혹은 종교에 속하거나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증오나 폭력을 야기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사용된 표현이 충격적이고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표현은 특수하게 극적인 것이며, 피해를 입은 인종차별이나 고통을 공개적으로 라디오에서 발언한 것은 민법 제 1382 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문제를 야기하며, 그것은 원심판결에서 적법하게 정당화되었다.

Le Pen 씨의 유책을 선고한 판결에 따라, Le Pen 씨는 위의 각 단체들에 대하여 각기 손해배상(dommages-intérêt) 명목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정신적 손해는 원고단체들과 소송참가인에 의하여 제기된 전체적이고 불가분적인 손해이며, 항소법원은 단일적이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만 단일적인(하나의) 손해배상(유책)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적시된 바 대로 각 단체는 각기 정관상의 목적이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손해(피해)가 상이하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당연히 이들 단체간에 각기 손해의 배상을 배분하여 야 한다.

## 판결해설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의 민·형사사건 최고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 파기원의 판결이다. 프랑스의 최고법원은 파기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국사원(Conseil d'Etat)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에 위헌법률심판과 선거소송 등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있다.

라디오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자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즉 제 24 조 제 6 항에서는 출신이나 민족·국가·인종·특정한 종교에의 소속 혹은 비소속을 이유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증오 또는 폭력을 교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 48 조의 1 및 제 48 조의 2 에 의하면 정관에서 인종차별을 타파하거나 국가·민족·인종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에 기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레지스탕스 또는 집단수용소 포로의 도덕적 이익 및 명예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이나 반인륜 범죄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단체들의 원고적격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동법 제 65 조에서는 이 법률상의 범죄 및 민사소송에 관한 시효를 3월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법률에 의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었다. 하지만 민법 제 1382 조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모든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단체들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다.

이 판결에서는 라디오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자에 대해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밝힌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36 호, 1996년 11월(제 9호).138-139면.)